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3. 12. 15 조례 제46호〕

개정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일부개정 2011. 6. 10 조례 제381호
일부개정 2015. 5. 8 조례 제5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6. 10, 2015. 5. 8〉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1. 6. 10〉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1. 6. 10〉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개정 2011. 6. 10〉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